

해외기술규제 분석 의견서

기관명	KOTITI시험연구원
담당자명	서동민

통보 / 미통보 번호	2026-1354	규제명	플라스틱 제품 환경 라벨링에 관한 법률, 상원 법안 567호 제정(2011년) 및 기타 - 수정안 - (허위 재활용 가능성 표시에 관한) 상원 법안 343호 제정(2021년)
-------------	-----------	-----	---

개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주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관련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원 법안 SB 343를 2021년 승인·제정함 본 규제는 기존 환경 광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의 사용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재활용 가능 표시("recyclable", 추적 화살표 기호 등)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재질 및 형태가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60% 이상을 포괄하는 지역의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수거될 것 주 전체 재활용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선별될 것 선별된 물질이 재생시설로 이송되어 실제 재활용되고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활용될 것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의 경우, 기존 미총족 시 수지 식별 코드(1~7)를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표시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수지 식별 코드 자체는 별도의 표시 의무에 해당하며, 화살표가 없는 단순 삼각형 내부 표시는 재활용 가능성 표시와 구분함 또한 재활용 가능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함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0월 4일 이후 제조된 제품 및 포장재부터 적용됨 캘리포니아의 물질 특성 조사 결과 발표일인 2025년 4월 4일부터 18개월 경과한 2026년 10월 4일이 적용 시점에 해당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재 중 재활용 관련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됨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뿐 아니라 비플라스틱 제품·포장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를 포함함

무역 기술 장벽 (TBT)	TBT 유형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규제	<input type="checkbox"/> 급박한 시행	<input type="checkbox"/> 규제 불명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부족	<input type="checkbox"/> 인증지연
	관련 조항 및 TBT 요소	규정 문서 조항	TBT 협정 근거 조항	TBT 협정 위배사항		
		Public Resources Code §42355.51(d)	WTO/TBT 협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가능성 판단 기준이 캘리포니아주의 실제 재활용 시스템 및 물질 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운영되는 구조로 확인 - 제품별 재질·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성 조사 결과 및 후속 업데이트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Public Resources Code §42355.51(b)	WTO/TBT 협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관련 표시 사용을 일정 요건 충족 시로 제한하는 구조로서 소비자 보호 목적에 기반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표시 방식 및 포장 설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문서 전반	WTO/TBT 협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제는 WTO TBT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며,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보 대상 해당성에 대한 검토 여지 존재 				

분석 의견	산업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허가 제도는 없으나, 재활용 표시 사용 요건 제한으로 제품 표시 및 포장 설계에 영향 가능 ▪ 글로벌 공용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 식별 또는 재활용 관련 표지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재활용 가능성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캘리포니아 판매 제품에 한정한 별도 라벨·포장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 가능 여부가 법상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 및 CalRecycle 물질 특성 조사 결과 기반으로 판단되어 제품 재질·구조 검토 필요 ▪ 재활용 표시 관련 근거자료 보관 의무로 내부 관리 부담 발생 가능 ▪ 특히 글로벌 단일 포장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동일 표지의 법적 의미가 국가·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포장 운영 및 공급망 관리상 부담이 커질 가능성 존재
	관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원재료 및 포장재 제조기업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 식품·음료 및 소비재 기업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등) ▪ 화장품 및 생활용품 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 포장재 및 필름·패키징 기업 (삼양패키징, 율촌화학 등) ▪ 가전·전자제품 제조기업 중 글로벌 공용 포장 적용 기업 (LG전자 등)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사전 점검 ▪ 기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표시 사용을 보수적으로 검토 ▪ 포장재 구성요소(재질, 잉크, 접착제 등) 사전 점검 ▪ 관련 근거자료 확보 및 내부 관리체계 정비 ▪ CalRecycle의 SB 343 물질 특성 조사 및 후속 자료 지속 모니터링 ▪ 글로벌 공용 포장에 사용 중인 표지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가능성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필요 시 캘리포니아 판매 제품에 대한 전용 라벨·포장 운영 가능성 검토 ▪ 업계 의견 제출 또는 제도 개선 건의 시, 글로벌 포장 운영상 부담 및 지역별 표시 해석 차이에 따른 규제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안 고려
	기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재활용 기준 기반 적용 구조로 기업의 지속적 기준 확인 필요 ▪ 표시 제한에 따른 포장·라벨링 부담 발생 가능 ▪ 캘리포니아 규제의 핵심은 추적 화살표 기호를 단순 재질 식별표시가 아닌 재활용 가능성 주장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지역의 재질 식별 또는 분리배출 안내 중심 표시 체계와 비교할 때 기업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